

해외파생상품거래 입출금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고객예탁금 관리 및 입출금에 대하여 위탁자와 유진투자선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이라 함은 해외파생상품거래 목적으로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회사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회사 명의의 고객예탁금예치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선물업자감독규정 제56조 3항 및 제 67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입금"이라 함은 위탁자가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출금"이라 함은 위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부터 위탁계좌개설신청서상의 위탁자 명의의 은행출금지정계좌(이하 "출금지정계좌"라 한다)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4. "환전"이라 함은 해외선물거래소에서 지정한 통화로 위탁자의 예탁금을 환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입금) ①무통장입금 등을 통한 회사의 지정된 외국환은행계좌로의 입금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하되,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등은 반드시 현금처리한 후 입금한다.

②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은행계좌외의 타계좌로는 입금하지 아니한다

③입금시 입금자는 반드시 해당 위탁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 (입금의 확인) 위탁자는 지정된 외국환은행계좌로 입금한 경우 회사와 입금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회사와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에 관한 사항이 영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금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출금) ①위탁자가 회사에 출금을 신청한 때에는 위탁자가 계좌 개설시 지정한 출금지정계좌로 출금처리 함에 동의한다.

②회사는 위탁자 보호를 위하여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출금지정계좌 외의 타계좌로는 출금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본인확인) 위탁자는 입금 및 출금시 회사가 위탁자 본인확인을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동의한다.

제7조 (출금지정계좌의 설정) 위탁자는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출금목적으로 위탁자 본인의 원화 및 외화계좌를 2개 이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출금지정은행계좌의 명의인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위탁자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환전) 위탁자의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환전의 시기는 회사가 지정하는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며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적정한 환율로 이루어진다

제9조 (입,출금 신청시간) 당일의 입,출금 신청은 16시까지 가능하며, 16시 이후에 입금처리된 경우에는 익일 입금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출금의 취소)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가 폐쇄된 경우, 명의변경된 경우 또는 최고예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출금요청은 위탁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위탁자의 연락처로 당해 사실을 통지한다.

제11조 (면책사항) ①위탁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회사가 신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전산장애, 회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탁자는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은행계좌사항)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에 명의변경, 통장보실, 인감변경,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당해 출금지정계좌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자동해지)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가 폐쇄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4조 (수수료부담) 입금 또는 출금시 송금수수료 또는 은행간 타행환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5조 (전화 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입,출금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제16조 (약관변경 통지)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